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0269 배당이의
원 고 1. A
2. B
피 고 ■■■시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25.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4,698,630원을 213,982,955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525,810,766원을 886,526,44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9.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4,698,630원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525,810,766원을 1,100,569,396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6. 2. 14. E 소유의 ■■■시 F 등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처분청 ■■■시장)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체납한 아래 각 조세와 관련하여 E가 G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E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1999.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단위 : 원)

년도	과세번호	법정기일	세 목	세 액	가산세	가산금	합 계
1994	H	1994. 6. 1.	종합토지세	197,878,270	0	112,566,060	310,444,330
1995	I	1995. 6. 10.	구재산세(건축물)	63,890	0	3,180	67,070
1995	J	1995. 10. 10.	종합토지세	143,140,080	0	110,217,180	253,357,260
1995	K	1995. 11. 10.	구취득세(부동산)	6,118,840	0	4,711,130	10,829,970

다. D이 2009. 2.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F 등 7필지가 1,307,700,000원에 낙찰되었다.

2) 피고는 법정기일이 1994. 6. 1.인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총 9건의 체납세액 합



계 1,545,253,73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위 4건 외에는 법정기일이 모두 1996년 이후이다.

3)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9. 실제 배당할 금액을 1,287,274,202원으로 확정 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574,698,630원을 배당하고,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6순위로 525,810,766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E의 G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 중 574,698,630원이 원고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선순위라고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E는 피고의 G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당시 G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G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E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G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하여서 한 피고에 대한 574,698,630원의 배당도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서 교부청구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가지고 [REDACTED] 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사건에서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중으로 배당받게 되는 부분은 위법하여 변경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고가 E에 대하여 G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한 자료 등이 폐기되어 구체적인 조세채무의 확정절차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 및 가산금 교부청구를 하여 1994. 9. 29. 7,886,724,880원을 교부받았는데, 위와 같은 교부는 ■■■세무서장 및 그 전신인 ■■■세무서장이 M, E에게 부과·고지하였던 1981년도분부터 1993년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그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G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사실, M, E는 대법원 82도2873 사건에서 자신들이 G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주장하기까지 한 사실(위 82도2873 사건에서 대법원은 M, E의 당해 범행 당시 G이 M, E의 실질적인 "1인 주주회사"였다고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로써 대법원이 M, E가 G의 "과점주주"도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한편 ■■■시가 2012년경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구리시 N, O, P에 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는데, 위 공매절차에서도 피고가 체납세액



1,545,253,730원(위 총 9건의 세금과 같음)의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하였고, [REDACTED] [REDACTED]공사가 2014. 9. 25. 피고에게 360,715,675원을 배분한 사실, 이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REDACTED]공사 및 피고 등을 상대로 배분계산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798호)를 제기하였는데, 2015. 5. 14. '피고가 E에 대하여 한 각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는 볼 수는 없고, 설령 각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압류에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G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의 G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당시 G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G의 본세 채납으로 인하여 징수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게 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 또는 변경시켜야만 할 것인데, E 등이 자신들을 G의 과점주주로 보아 여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이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E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고,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이를 근거로 한 배당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배당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지만 하던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조 제1항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일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이른바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4. 9. 25. [redacted] 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360,715,675원을 배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조세우선변제권의 취지와 민법 제368조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redacted] 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인 2015. 1. 9.에 실시된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배당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전액 배분을 받았다면 위 공매절차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범위 내에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및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액수의 조세는 법정기일이 1994. 6. 1.인 종합토지세 등 4건으로 동일한 조세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위 공매절차의 배분결과가 고려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에서 다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이 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배당표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4,698,630원 중 이 사건에서 이중으로 배당받게 되는 360,715,675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4,698,630원은 213,982,955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525,810,766원은 886,526,44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5-19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최선상

 판사 홍주현